심원초등학교	**교육부 고시(2023.9.1.)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사항 안내**	**참, 힘, 꿈을 함께 가꾸고 키우는 심원행복교육**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29 / ☎ 563-5020

안녕하십니까?

기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.

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,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도 부탁드립니다.

[학생 분리에 관한 규정]

제 12조 6항 제1호: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
제 12조 6항 제2호: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(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)

[제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]

생활지도	요건	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	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	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나	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'가'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교무실 및 상담실 교감 지정 장소 (수업 종료 시 까지)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	
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	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등 (점심시간 및 하교 후 적정시간 활용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(20분) 보장	
	나	① 3호 '나'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 및 상담실 교감 지정 장소 (점심시간 및 하교 후 적정시간 활용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
기타	* 지각: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※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감, 교장 및 교원의 협조로 이루어질 수 있음.				

뒷면 계속

[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]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하교시 당일 본인이 수령을 원칙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	5일	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	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			
4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			

2023. 9. 21

심원초등학교장